



건설관련 법률상담

곽동우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도급인에게 보낸 경우의 문제



〈사례〉 A사는 B사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B사는 그 중 일부를 C사에게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B사는 C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A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1억원을 C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하단에 A사 귀하라고 기재하여 C사에게 주었다. C사는 이를 A사에게 발송하여 A사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C사는 A사에 대하여 B사의 공사대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A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A사는 자신은 하도급대금 직불에 동의한 적이 없고, B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위 직불동의서를 받은 이후에 B사와 이미 다 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C사는 하도급대금직불합의 또는 채권양도를 주장하여 A사로부터 1억원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해설〉 본 사례에서 C사가 A사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 1억원을 지급받으려고

할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존재한다는 것과 B사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이다.

우선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3자간에 직불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본 사례에서 A사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단순히 B사가 작성해준 직불동의서를 C사가 A사에게 보내서 A사가 이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그런 3자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무에서도 이런 직불동의서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내는 예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3자간의 합의가 존재하는지는 도급인인 A사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3자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려면 가급적 3자가 직불에 합의한다는 서면을 만들어 모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는 위와 같은 B사의 직불동의서에 A사도 이에 동의한다는 기재를 받아놓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다만 이런 3자간 직불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C사가 직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자신이 직접 시공한 금액범위 내라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다음으로 C사가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은 B사의 채권 1억원을 자신이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B사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자신의 채권 1억원을 C에게 양도하였고 C사가 직불동의서를 A사에게 보냄으로써 양도통지도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채권양도는 양자 간에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도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하여야 하지만 양도인이 자신을 대

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을 양수인에게 수여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사실을 통지한다고 밝히고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사례의 경우에 B사와 C사 사이에 B사의 채권 1억원을 C사에게 양도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채권양도통지를 B사가 아니라 C사가 하였지만 이는 B사가 자신을 대리하여 통지할 권한을 C사에게 수여해서 C사가 B사를 대리하여 통지한 것으로 보아서, 채권양도가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A사는 C사에게 채권양수금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소지도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채권양도의 통지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즉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을 정한 것은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채무자 입장에서 누가 현재의 유효한 채권자인지를 알기 편하고, 그래야 채권을 양도하든지 질권을 설정하든지 하는 채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신뢰가 형성되고 거래관계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에, 양도인이 양도통지행위를 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것을 쉽게 인정해버리고, 양수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한 것을 쉽게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한 것을 인정해주어 버리면, 이러한 채권양도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따라서 채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이라는 채권거래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대리권을 양수인에게 주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그런 입장에서 본 사례를 보면 B사는 자신의 공사대금채권 1억원을 C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C사에게 교부하였고, C사는 이를 A사에게 보냈는데, 그것은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한 3자간의 합의를 위하여 C사가 A사에게 보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 문서에 채권양도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이 문서를 채권양도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B사가 C사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사실을 A사에게 통지할 권한을 확실히 수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C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위 직불동의서를 A사에게 보냈는데, 이 또한 자신이 B사를 대리하여 A사에게 통지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 사례는 B사가 C사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의 유효한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C사는 A사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도 없겠다(대법원 2010다96911).

이와 같이 본 사례와 같은 경우는 C사가 3자간에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B사의 채권을 유효하게 양도받고 통지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을 잘 살펴서 하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3자간의 직불합의서를 확실히 작성해 놓거나, B사의 직불동의서에 A사의 동의도 확실히 받아 놓아야 하고, 이를 채권양도로 처리하려면 우선 채권양도합의서를 작성하고, 양도인인 B사가 직접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이 좋다. 통지를 양도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채권양도합의서에 통지권한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고 확실히 기재하고, 양수인이 통지할 때에도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한다고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